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경 기 도

목 차

I. 법인의 개념

Q1. 비영리법인이란?	5
Q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6
Q3. 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7
Q4. 공익법인이란?	8
Q5. 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9
Q6. 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10
Q7. 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1
Q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12
Q9. 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13

II. 설립허가 신청 준비

Q10.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14
Q11. 법인이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14
Q12.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15
Q13. 법인명 영문명도 가능한지?	16
Q14.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17
Q15.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서면결의 가능 여부 ..	18
Q16. 총회 의사록(회의록)에 임원 날인이 필요한지?	19
Q17. 총회 의사록(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19
Q18. 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꼭 필요한지?	21
Q19. 사무집기도 기본재산이 될 수 있는지?	22

Q20.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 규모	23
Q21.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24
Q22.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25
Q23.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6
Q24. 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27
Q25. 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	27
Q26. 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28

III. 설립허가 신청

Q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28
Q2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29
Q2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30
Q30.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	30
Q3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31
Q3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후 법인이 해야 할 일	32

IV. 정관변경

Q33. 법인명,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	33
Q34. 목적사업을 변경·추가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이 바뀌게 되나요? ·	33
Q35. 소재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고자 할 때(주무관청 이관)	33
Q36. 기존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34
Q37.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35
Q38. 분사무소(지점) 설치에 필요한 구비서류	36
Q39. 분사무소 설치 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36
Q40.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37
Q4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가능 여부	38
Q42. 정관에 기재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 의결 시 기준이 되는 이사의 수는?	38

V. 해산 및 청산

Q43. 사단법인의 해산 절차	39
------------------------	----

VI. 법인 관리

Q44. 허가증 분실, 대표자 변경으로 법인 허가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40
Q45.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무관청을 모를 때	41
Q46.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41
Q47. 법인 내역이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에 없는 경우	41
Q48.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습니다.	42
참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	43

※ 본 사례집은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자료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며,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 자료의 효력은 없습니다.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는 각 주무관청(또는 도 허가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비영리법인이란?

-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으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등기를 통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는 구별됩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Q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차이점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을 의미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같은 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민간단체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비영리법인은 법인격을 가지나, 비영리민간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 [참고] 도 홈페이지(gg.go.kr) > 분야별 정보 > 조세·법무·행정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법인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Q3**비영리법인 보조금 지원 여부**

-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 공모 시 신청 자격이 비영리법인이면 선정 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조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도 홈페이지(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 ‘공모’ 검색

Q4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협의의 공익법인과 광의의 공익법인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협의의 공익법인(「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4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법 제2조)
- 광의의 공익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고시된 법인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대해 고시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지정 여부 확인)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Q5**우리 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 설립허가증 하단에 기재된 허가조건이나 설립허가 공문을 통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고시한 법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공익법인

Q6**고유번호증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법인인가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고유번호 부여로 인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규칙」 제3조 각호의 서류를 구비·신청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사항이고, 비영리법인 설립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 ‘허가’사항임.)
- 비영리법인 허가 여부는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및 법인 등기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확인

▶ 도 홈페이지(www.gg.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제공 > 사전정보공표 > 52. 비영리법인 현황

법인 등기사항 조회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 > 상호명 검색
(‘전체 등기소, 전체 법인, 전체 등기부상태’ 선택하여 조회)

Q7**고유번호증이 있는데 법인 허가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전인 경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고유번호 부여로 인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허가 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10~33번 또는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p.14)을 참고 바랍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허가증 재발급 시)
 - 비영리법인 주요 질의응답 사례집 47번(p.41) 또는 경기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p.38)을 참고 바랍니다.
- 허가 여부를 모르는 경우
 -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열람을 통해 설립허가 여부, 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를 통해 설립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비영리법인 현황 확인

▶ 도 홈페이지(www.gg.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제공 > 사전정보공표 > 52. 비영리법인 현황

법인 등기사항 조회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 > 상호명 검색
(‘전체 등기소, 전체 법인, 전체 등기부상태’ 선택하여 조회)

Q8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 비법인 사단·재단 또는 단체의 성격, 운영 방향이나 규모 등에 따라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을 거치지 않고도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승인) (국세기본법 제13조)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신청/정정 등 > 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 관련 문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 고유번호의 부여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무관하며, 이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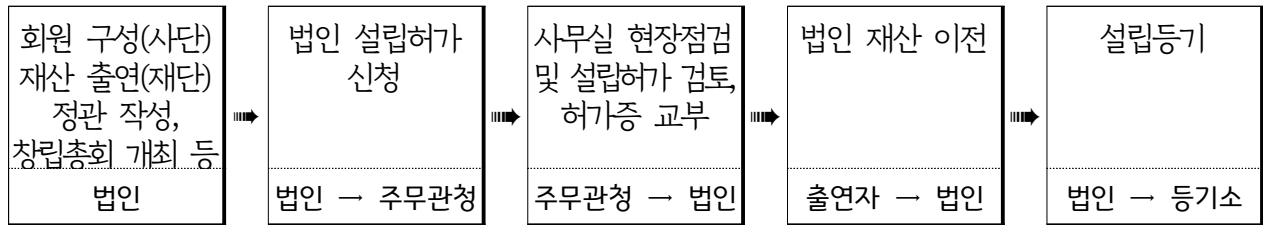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Q9**종중의 재산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등) 고유 의미의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등)
-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한 비영리법인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 다만, 종중은 그 재산관리를 위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 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유번호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따른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10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Q11 법인이 사단법인의 설립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 사단법인에 있어서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설립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설립 행위가 해당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Q12 법인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인 경우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 동일명칭 조회 방법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 > 상호명 검색

- 법률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경우(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 은행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자 이외에 명칭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관련 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할 때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은행·은행업 또는 은행업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그 외 관련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

Q13 법인명 영문명도 가능한지?

- 영문명만으로 이루어진 법인명은 등기가 불가합니다.
- 단,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표기와 함께 적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그 외 관련 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 「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Q14 온라인 총회 가능 여부

-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출석하여 진행
- 또한 온라인 총회 시에도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은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검사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유권해석)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된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등 상시 허용 사항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도 홈페이지(gg.go.kr) > 분야별 정보 > 조세·법무·행정 > 비영리법인·단체 > 비영리법인 안내 게시판

Q15**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의 서면결의 가능 여부**

- 「민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사단법인의 사원(회원)은 법인의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서면결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때도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의사록이 등기할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재단법인의 이사회는 「민법」상 법인의 필요기관이 아니며 정관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관으로서 「민법」에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단법인 이사회의 서면결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단, 「공익법인법」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의 서면결의가 금지됩니다.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결정족수 등)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Q16 총회 의사록(회의록)에 임원 날인이 필요한지?

- 총회의 의사록(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Q17 총회 의사록(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을 의결하거나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참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

※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대 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지정절차 : 비영리법인의 추천신청 → 주무관청의 추천 공문 발송 → 법무부 지정·고시
- 신청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설립근거 법령,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 외 서류 등
- 지정/고시 : 1년 4회 /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go.kr) 고시(‘의사록 인증’으로 검색)

Q18**비영리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꼭 필요한지?**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정관 작성 시 자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립하려는 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시 재산 출연이 필수는 아니나,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해 일정 수준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법인이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재산 출연의 규모는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범위, 사업의 내용,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Q19**사무집기도 기본재산이 될 수 있는지?**

- 사무집기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으로써, 운영 재산(보통재산)에 속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등이 속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보통재산)이 됩니다.
- 기본재산은 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대지, 건물, 임야 등)이나 재산 감소가 초래되지 않는 동산(현금, 임차보증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 재산 목록이 정관 별지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무 관청의 정관변경 허가가 필요합니다.

- 「법인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회원)의 회비 등,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재산출연내역, 회비 모금계획(사단법인) 등 관련 제반 서류를 바탕으로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시어 주무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편람 p.14, p.19 참고)

Q21 비영리법인 이사 수 제한 여부

-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은 「민법」 제57조에 따라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법인의 이사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만큼 법인의 정관에 규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타 개별법이나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다 혹은 과소 이사 수는 지양해야 하며, 감사 선임은 필수는 아님.)

민법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단, 「공익법인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Q22**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선출 시 외국인도 가능한지?**

- 임원 선출 시 내·외국인 제한은 없으나, 등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국내거소신고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법」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일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법인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설립허가 기준에 비추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Q23**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계획서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구체화한 서류입니다. 그 안에는 사업의 목적, 시행시기 및 일정, 장소, 대상, 사업내용, 수행방법, 인력 운용 계획,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향후계획, 기대 효과 등 사업 실행을 위한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사업, 수지예산서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통일성이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법인이 당해연도 하반기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Q24**설립허가 신청 시 기존 사업실적이 필요하나요?**

- 기존 사업실적은 설립허가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소관 주무관청별(외교부 소관* 등)로 1년 이상의 사업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요사업이 해외에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국의 법률 및 문화에 대한 이해 등 관련 기술적 비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적 필요
- 또한 경기도는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사업계획서 서식(1-10)에 과거 사업 운영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적 제출 시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의 타당성, 법인의 운영 능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5**설립허가 시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규정이 있는지?**

- 비영리법인의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이 현장 확인을 통해 법인의 소재지가 사무공간으로 적합한지 실시합니다.

법인 사무실 현장 점검사항

1. 사무실 소재지가 신청서 상 소재지와 일치하는지
2. 용도가 사무실이며, 회원이 상시로 출입 가능한 장소인지(공동주택, 주거시설 등 불가)
3.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비품이 갖춰져 있는지
4.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5. 사무실 외부에 법인 현판(명패 등)이 설치되어있는지(혹은 설치 가능한지)
6. 재산목록, 사원명부(민법 제55조), 총회의 의사록(민법 제76조) 비치 여부 등

Q26 법인의 회원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는지?

- 법인의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회원이 반드시 경기도 거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의 정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총회의 결의권을 가진 자이면 됩니다.

Q27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요건

-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임원 및 회원 구성,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 여부 등을 바탕으로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법인규칙」 제4조 제1항 각호의 설립허가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설립을 허가합니다.
- 신청서류만을 빠짐없이 제출하였다고 해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제출서류를 통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또한 허가 여부는 허가요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한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등)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Q28**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에는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 등을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 및 서식은 업무편람 p.14 및 p.41을 참고 바랍니다.
- 위 사항은 공통사항이며, 개별법이나 중앙행정기관 편람 등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①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설립취지서 ③설립발기인 인적 사항 ④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⑤임원취임승낙서 ⑥창립 총회 회의록 ⑦정관 ⑧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⑨재산출연증서 ⑩사무실 확보 증명서 ⑪당해연도 사업계획서 ⑫당해연도 수지 예산서 ⑬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⑭회원명부(사단법인)

(※ 제출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므로 주무관청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민원 신청해야 함.)

Q2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청별 담당 사무를 확인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위임 여부를 파악하여 법인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경기도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업무편람 p.6)
 - 경기도 허가 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검토합니다. (업무편람 p.8)
- * 개별법이나 자치법규에 의거하여 시·군에 위임된 경우도 있음(경기도 공동주택 관련 법인 등)

Q30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인가요? (법인의 활동 범위가 여러 개 시·도에 걸치는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법인의 활동 범위가 1개 또는 2개의 시·도에 국한된 경우에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등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의 활동 범위가 해외를 포함하여 규정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이 됩니다. (법령해석례 11-0352, 2011. 8. 11., 보건복지부)

Q31**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접수처
 -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받는 사람에게 정확한 주소와 민원실 명칭을 기재하여 서류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기재로 인한 분실 책임은 발송자에게 있습니다.
- ※ 민원신청 전 반드시 허가부서와 협의하신 후 민원실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사실 보고 (업무편람 p.22)
 - (재산이전) 허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주무관청에 제출
 - (설립등기) 설립등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제출
- 법인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업무편람 p.22)
 -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 재산목록 작성 및 사무소에 비치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
 - 사원명부 비치 및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업무편람 p.22)
 -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민법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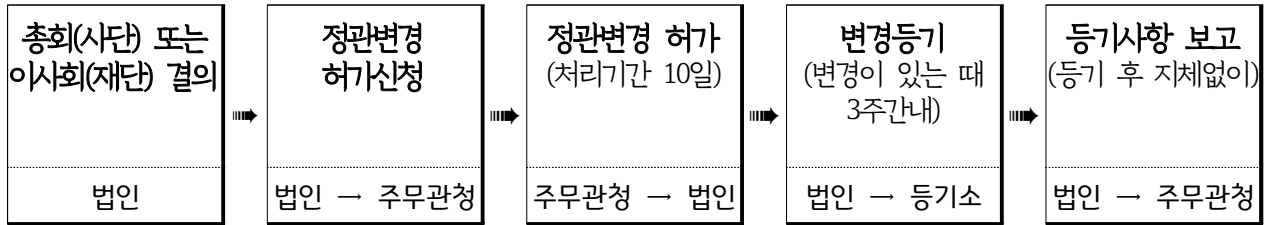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Q33

법인명, 목적사업, 소재지 등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 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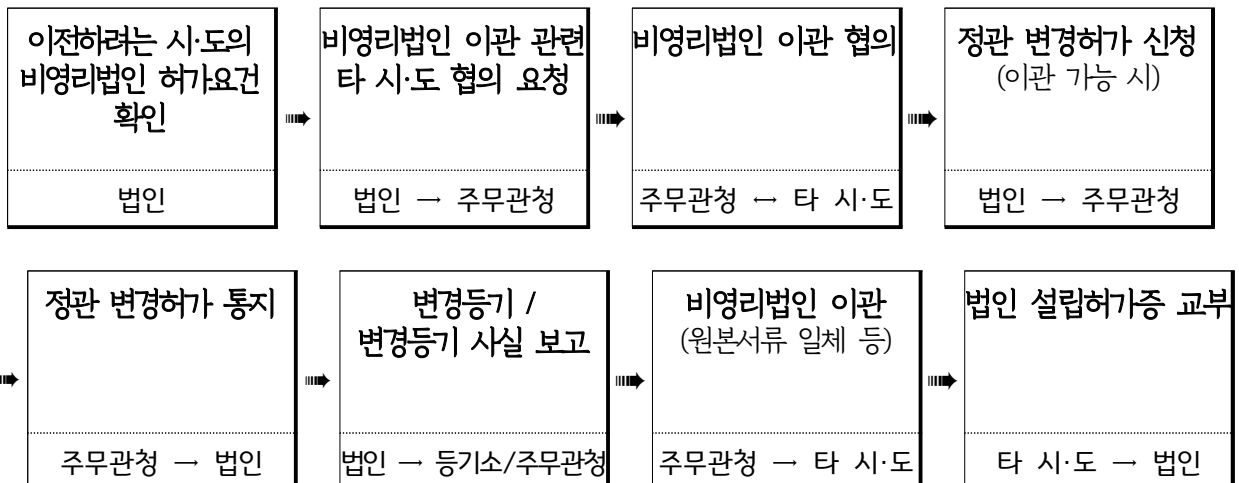
Q34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이 바뀌나요?

- 단순한 목적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주무관청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주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되므로, 목적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인해 법인의 주된 사무가 변경된다면 주무관청도 바뀔 수 있습니다.

Q35

소재지를 타 시·도로 이전하고자 할 때(주무관청 이관)



- 기존에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공익법인법」 제2조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고 법인이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변경을 통해 공익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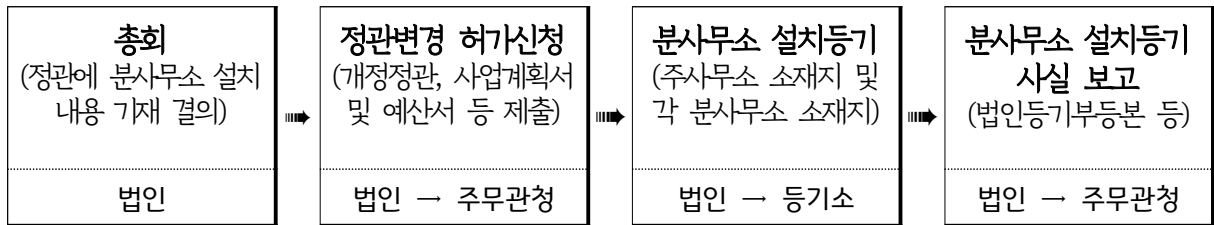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기부금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Q37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 분사무소(지점) 설치 절차



- (정관변경 허가신청) 먼저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 결의(재단법인)를 거쳐 분사무소 설치 내용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합니다. (업무편람 p.25)
- (분사무소 설치등기) 법인은 정관변경 허가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분사무소 설치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 주무관청 보고) 등기하였을 때에는 법인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1부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Q38**분사무소(지점) 설치에 필요한 구비서류**

- 분사무소 설치·폐지에 필요한 서류는 정관변경 허가신청 서류와 같습니다.

○ 정관 변경허가 신청 공통서류

- ①-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①-2. 정관 변경 사유서
- ①-3. 정관 변경 신·구 대비표 ①-4. 개정될 정관
- ①-5. 정관 변경 관련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 추가 제출서류

-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재정확보 방안 포함)
- ④-1. (유상임차 시)임대차계약서 ④-2. (무상사용 시)부동산사용승낙서
-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제출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므로 허가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민원 신청해야 함

Q39**분사무소 설치 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

-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허가신청 시 분사무소 설치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40**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

- 기본재산을 처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의 기재 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 존립의 기초가 되므로 주무관청은 기본재산 처분이나 변경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허가합니다. (인건비 등 경상비용 지출과 재산 가치가 자연 감소하는 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칙적 불허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본재산의 처분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등)

기본재산 처분·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신청 구비서류 ①정관 변경허가 신청 공통서류(①-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①-2. 정관변경 사유서 ①-3. 정관변경 신·구 대비표 ①-4. 개정될 정관 ①-5. 정관 변경 관련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재단법인) 회의록) ②기본재산 처분이유서(취득 시 취득사유서) ③처분재산(취득 시 취득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 ④처분(취득)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 시) 그에 따라 소실될 재산의 보충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⑤처분재산(취득 시 취득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⑥등기부등본(부동산인 경우) ⑦금융기관 증명서(금융재산인 경우) 등

(※ 제출서류는 추가될 수 있으므로 허가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민원 신청해야 함.)

Q4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가능 여부

- 법인의 설립목적과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아야 하고,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를 신고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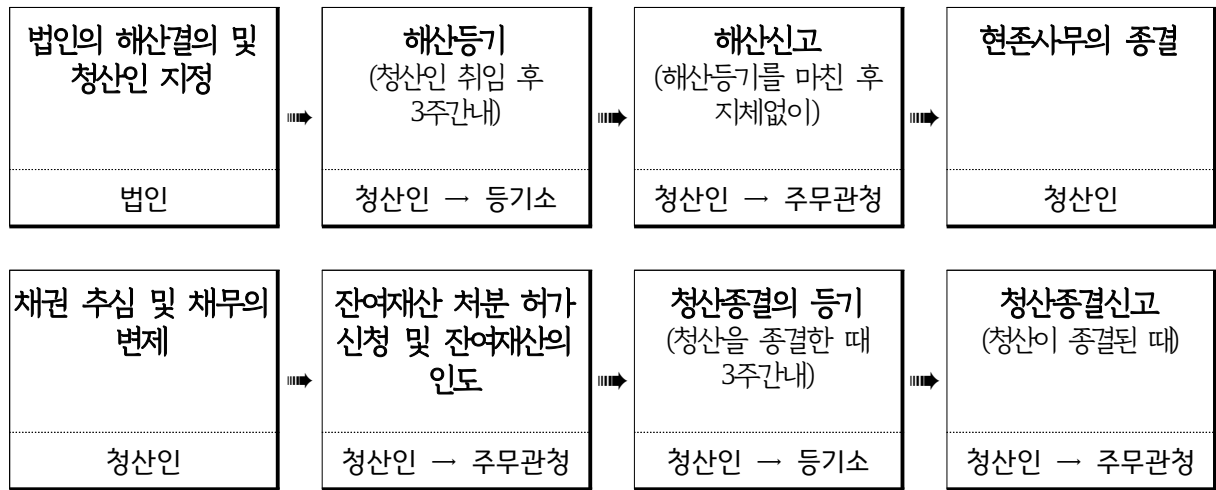
※ 법인세 부과 대상 사업 등 세금 관련 사항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 참고 및 국세상담센터 문의(☎국번없이 126)

Q42 정관에 기재된 이사 수와 현재 이사 수가 다를 경우 이사회 의결 시 기준이 되는 이사의 수는?

- 정관상의 이사 수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결의는 절차상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법인은 이사의 결원이 있는 때 정관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Q43

사단법인의 해산 절차



Q44**허가증 분실, 대표자 변경으로 법인 허가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허가증 분실이나 대표자 변경과 같이 정관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허가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허가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서류를 갖추시어 허가부서와 협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허가증 분실 시 제출서류
 - 법인명의 공문(분실 사유 기재, 법인 인감 날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2. 대표자 변경 시 제출서류 (대표자 변경등기 후 재발급 신청)
 - 법인명의 공문(재발급 사유 기재, 법인 인감 날인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허가증 원본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사단법인)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법인) 사본
 - 대표자 이력서(사진 포함, 인적사항, 법인의 주된 사무와 관련된 경력 등)
 - 취임승낙서, 대표자 인감증명서(날인 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 시)
 - 변경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

Q45 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 주무관청을 모를 때

-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통해 법인 허가부서(소관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도 홈페이지(gg.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제공 > 사전정보공표 > 52. 비영리법인 현황

Q46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알고 싶어요.

- 경기도에서는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을 도민께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아래의 경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속경로 : 도 홈페이지(gg.go.kr)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제공 > 사전정보공표 > 52. 비영리법인 현황

Q47 법인 내역이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에 없는 경우

- 경기도에서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였음에도 경기도 비영리법인 허가 현황에 없는 경우 법인 허가증 및 정관, 허가사항, 허가대장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대장에 반영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소통협치관(☎031-8008-549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48**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싶습니다.**

- 먼저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 기부금품 모집등록
 - 등록관청 : 경기도(기부목표액 1천만원~10억원), 행정안전부(기부목표액 10억원 초과)
 - 신청방법 : 1365기부포털에 단체 등록 후 기부금품 모집 등록신청
 - 처리기간 : 20일 ※ 자세한 사항은 1365기부포털(www.nanumkorea.go.kr/) 참고
-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주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참고자료 및 업무편람 p.6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
해당 분기말의
직전달 10일까지

국세청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추천
⇨
해당 분기말의
직전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

지정
⇨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신청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신청방법

-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공익법인 추천 요청
 - (전자신청)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추천신청 구비서류 제출

※ 관할세무서 찾기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

□ 신청문의

- (전자신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 (평일 9:00~18:00)
- (우편/방문) 관할세무서

□ 신청기한

구 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 (비영리법인 등→국세청)	추천기한 (국세청→기재부)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 '22년에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22.10.10.까지 신청하여야 함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시 구비서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우편/방문) 접수

구비서류	참고 서식
1.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1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5 서식)	업무편람 p. 71
2. 법인설립허가서	-
3. 정관	-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제출	-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업무편람 p. 73
5.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신규신청 시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 서식)	업무편람 p. 74
7.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 시 제출)	업무편람 p. 75

※ 6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 7의 서류는 재지정 신청 시에만 제출